

답변서

사 건 20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정덕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위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취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이유

I. 피고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요지

1. 원심이 공개하라고 한 이 사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다음 3가지입니다.

- | |
|---|
|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

그리고 위 정보에서 각 가해자 성명부분은 제외입니다. 피고는 ‘개인신상’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정보 어디에 개인신상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 가능하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에서 별도로 반박하겠습니다). 피고는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단44581 판결)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사례들은 모두 ‘실명’을 명시했거나, 개인을 ‘특정’한 경우이므로,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가해 당사자로 손해배상을 한 다른 사건{을 제5호증 판결문(2016가합536843), 을 제6호증 판결문(2017나2052499), 을 제7호증 판결문(2018다228769)}(이하 ‘관련사건’)의 경우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으로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시 이 사건 원심판결의 주문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심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의 경우 ‘학교장’, ‘행정실장’ 등 간접적 신상의 언급조차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니

다. 그리고 피고는 가해교사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직책이나 이니셜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도 위 정보들만을 충분히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 관련사건에서 피고가 ‘학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개인을 특정함으로써 발생했던 귀책을 왜 이 사건 항소이유로 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정보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원심 판결문 5쪽)

2.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인지 및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피고는 “SNS와 언론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 행위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원심 판결 주문사항으로 인해 어떤 개인식별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불특정다수가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라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한 정보가 알려진다고 하여 개인이 어떻게 특정되어 가해교사가 불특정다수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의 경우에도 피고는 적어도 ‘주변인’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하다고 하는데 위 정보들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도 ‘주변인’들은 자연히 또는 개인적 노력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알 수 없는 정보 뿐만이 아니라, 알려면 알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알아내야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사건발생 학교를 찾아가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하면 이 사건 정보들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피고의 감사 업무를 포함한 인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

는지

관련하여 1심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실제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기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감사 업무를 포함한 인사 관리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쟁점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주장만을 하였을 뿐, 원심의 판단을 반박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4. 기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패소 인정 발언 등

피고는 답변서 말미에서 본 사건과 관련 없이, 원고 및 원고가 소속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이 사건 관련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였습니다. 소송쟁점과 관련 없이 재판관을 이용하여 원고 및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부에 외람되오나, 피고가 문제 삼은 위 시민단체의 활동 관련하여 본

소송과 관련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4인{안영신(정책보좌관),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김종미(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관), 정명화(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소송수행 변호사)}은 원심 판결 이후인 지난 3. 17.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위 대리인과 원고 김정덕에게 항소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 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갑 제13호증의 1 녹취록, 갑 제13호증의 2 녹음 파일). 즉 패소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안영신 정책보좌관).

(35:44)

안영신: 마음이 무겁게 소송에 임했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이제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오늘 와서 말씀 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긴 논의를 거쳐서 말씀하신대로 항소를 해야되는 상황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육청들의 의견이나 이런 지점들을 어쨌든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 해봤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교육감님의 의지나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정책적으로 이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또 다른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즉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전국의 교육청들도 실질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추후 감사업무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시간을 좀 더 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및 위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말을 듣고 학부모로서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소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공무원들이 학교성폭력 사건처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에 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피고의 이유 없는 정보비공개와 항소강행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갑 제14호증 공동성명서(개인 164명, 단체 75개)}. 이런 설명까지 드리는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처럼 본 사안은 “정치적 쟁점화”가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민이 감시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이 상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학부모들과 아동·청소년, 시민사회 모두 본 사안을 무겁게 주목하게 있는데 학교성폭력 직접 관리 당사자인 피고는 여전히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표현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으니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인 원고로서는 실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II.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3호증의 1 녹취록
1. 갑 제13호증의 2 녹음파일
1. 갑 제14호증 공동성명서(개인 164명, 단체 75개)

2020. 7. 13.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귀중